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덕수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 조직개편에 따라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1명(5급 1명)을 통일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의 정원으로 재배정하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대구센터를 신설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35명(고위공무원단 나등급 1명, 4급 4명, 4·5급 1명, 5급 9명, 6급 8명, 7급 9명, 8급 3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수행하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에 관한 사항을 기상청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국립기상과학원에서 기상청으로 이체함에 따라 이를 국립기상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3. 5. 24. ~ 5.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통일교육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69명”을 “70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288명”을 “323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기상과학원의 직무란 중 “연구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에 관한”을 “연구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기상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21명”을 “119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제도혁신추진단	
연 락 처	(044) 205 - 2503